

## 식품 수입관련 규정

### 녹색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3-100호 –

#### 1. 목 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그 농산물에 사용한 농약등의 종류와 사용시기의 신고절차등을 규정하고 동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한 농산물에 대한 검사요령과 성실신고자에 대한 우대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녹색신고제도의 기본원칙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녹색신고를 성실히 한 자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되 녹색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3. 신고방법

녹색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의 녹색신고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여 수입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

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한다.

#### 4. 성실신고자 지정 및 보고

- 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녹색신고를 한 자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 통보한다.
-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와 녹색신고 내용이 5회이상 일치(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서 통보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동 종의 농산물에 한하여 성신실고자로 지정하고 이를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 통보한다.
-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녹색신고자 및 성실신고자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신고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신고서를 매

분기말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5. 성실신고자에 대한 우대조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성실신고자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대조치를 부여 할 수 있다.

- 가. 신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
- 나. 우선 선통관 조치하고 사후에 검사
- 다. 성실신고자 지정후 1년이 경과하고 5회이상 성실신고를 계속할 경우 수출국의 검사성적서 인정

## 6. 성실신고자 지정취소 및 해제

- 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성실신고자 지정을 받은 자의 신고내용이 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실신고자 지정을 취소하고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나. 성실신고자 지정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7회이상 성실신고시 성실신고자로 다시 지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6-44호 –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검사기관 인정기준 및 절차) ①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 공인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2. 국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의 공인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한 기관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 공인검사기관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대사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수출국 공인검사기관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정사항을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제2항의 신청서 및 제4항의 인정사항은 당해 수출국 정부를 경유하여 제출 또는 통보한다.
- ⑥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공인검사기관의 소재지 변경) 공인  
검사기관은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증명서 인정기준) ①공인검사  
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는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법 또는  
CODEX규정, AOAC, PAM의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한다. 만약, 이외의 시험방  
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시  
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수출국 정부의 협조) 수출국 정부는  
제2조제5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또는 소재지 변경)등의 제출과 인정사  
항 통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4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배제) 수출국 정부에서 축산물  
만을 검역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공인  
검사기관과 동기관에서 발행하는 축산물  
검역증명서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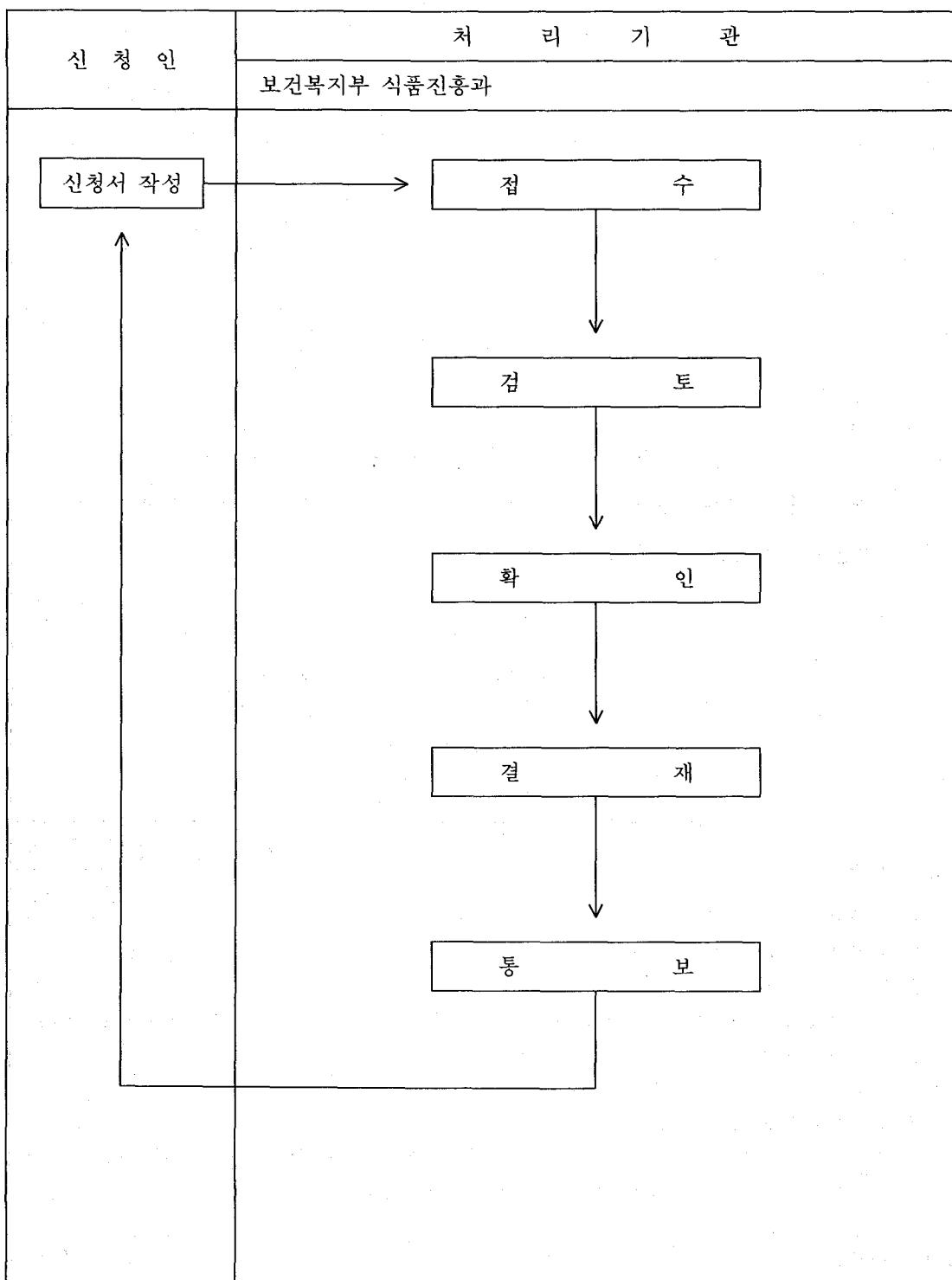
공인검사기관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소		
기관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검사대상 식품등 및 검사범위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일반현황(기능 및 연혁) 2. 조직 및 기구(조직도 포함) 3. 주요사업내용 4. 검사실적(최근 5년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농·수·축산물로 구분작성) 5. 주요실험장비현황 6. 시설현황 7. 검사인력현황(개인 숙련기간 포함) 8. 수출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검사기관에 한함)			

31311-11911 민  
'96.4.10 통제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2호서식)

검사증명서				
발행번호			접수일자	
발행국가			검사일자	
검 사 의 뢰 자	성명			회사명
	주소(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및 FAX 번호			
수 입 자	성명			회사명
	주소(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및 FAX 번호			
	제품명	수입량(총중량)	kg	포장단위
선적해·공항			운송방법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검체명(제품명)			유통기한	
검체채취지역			검체채취일자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기준치	시험결과치	비고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주소 :				
검사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직인
검사기관장 성명 :				(사인)

31311-11911 일  
'96.4.10 통제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 보건복지부 훈령 제40호 –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 공정성,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 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 경우 4~5일 이전 신고한 것은 3일전을 기산일로 본다)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보세구역 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밀검사 대상은 검체채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고사실의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자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조(서류검사시 확인사항 등)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의 서류검사시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 등을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6]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 2. 가. (2)의 규정에 의한 자사제품제조용원료(이하 “자사제품제조용원료”라 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자사명의 품목제조·가공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고자 그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그 품목의 제조·가공업자가 허가 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입식품 등에 부적합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4. 식품 등을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지 여부
5.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2)]의 수입신고서에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6]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 2. 가. (8)의 규정에 의한 동일사 동일식품 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동일사 동일식품 등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서 뒷쪽에 기재된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이 이전에 수입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주원료 성분배합비율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동일사 동일식품 등의 경우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밀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식품공전 제2.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벌크상태의 곡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벌크상태의 곡류

가. 검체의 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사로에 투입하기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일모선에 선적된 동일품명의 농·임·수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서 재질이 같으나 단순히 용도·모양·크기·제품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성이 있는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제6조(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에 대하여는 식품공전 제3. 7. 13)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이물·항생물질·방사능·아플라톡신·마비성폐독 등의 위해성분항목중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식품 등·특수영양식품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대상식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성분규격 관련항목을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1. 중금속의 함량(예 : 납, 카드뮴, 동, 주석 등)

2.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예 : 보존료, 타알색소, 인공감미료, 이산화유황 등)

3. 미생물의 오염도(예 :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크로스트리디움 등)

4. 불량지표항목(예 : 산가, 과산화물가, 메탄올, 포스파타제, 총페오포르바이드, 시안화합물, 휘발성염기질소 등)

5. 당해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성분으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선정하는 항목(예 : 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 주류의 알콜함량 등)

③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의 항목은 검사이력, 독성, 검출빈도 및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신선식품류 등의 검사)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신선식품류 등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필증을 우선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으로 부적합 되었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던 식품 등은 제외한다.

3. 수입신고서 접수당일(늦어도 익일)에서 류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5일이내에 정밀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가온보존 검사대상은 제외한다.

4.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우선순위등급중 1 및 2 순위 이외의 농약이라 하더라도 동시 다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분석 한다.

5.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입자가 신속히 이를 회수하여 반송, 폐기 또는 식용외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매유통계획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6.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동일사 동일식품 등의 서류검사 적용 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등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대상인 식품(다만, 식품첨가물은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허위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

제9조(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 ①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 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 역소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수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 신청서를 당해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의 검사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농·임·수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여러종류의 식품이 같은 용기 또는 포장 내에 함께 넣어진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전체식품의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3.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 II. 1. 8. 파. (2)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이 당해 식품 등의 포장지 등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 등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의 처리) ①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식품 등에 대한 검사기준과 검사결과를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 소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검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입식품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신선식품류 이외의 농·임·수산물이 조금 부패되거나, 변질 또는 폐사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이를 선별토록 하여 당해 물량에 대하여만 부적합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 된 동일사 동일식품 등 또는 유해물질 등이 함유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는 5회이상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활용 등) ①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자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공인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제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검사항목만을 인정하는 등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부만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

나. 시험방법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과 서로 다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수입식품 등의 목적외용도 사용승인)

①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6] 2. 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목적외용도 사용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나 신제품개발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위탁계약하여 자신이 수입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토록 의뢰하는 경우 및 식용외 다른 용도(공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은 경우
2.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품목이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조·가공업소 회사의 부도 또는 생산품 목이 판매부진(수입원료의 1/3 이상 제품사용)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5. 동일법인내의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6.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탁계약한 업소의 영업장 폐쇄, 영업허가취소처분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으로 다른 업소에 재계약

####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목적외용도 사용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2. 다른 업소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당해 원료를 판매하는 자 및 당해 원료를 구입하는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이 경우 수입식품 등의 목적외용도 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6. 부도 및 판매부진(수입원료의 1/3 이상 제품사용)으로 생산중단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7.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당초 계약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14조(행정사항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부 칙(제11호, '95. 12. 30)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6. 2.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사항) 수입식품관리지침('93. 7. 7)은 이 수입식품등검사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이전에 접수되었거나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수입식품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제16호, '96.3.18)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6. 4.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호, '96. 12.20)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6. 12. 24.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가 진행중인 수입식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이 훈령 시행당시 검사기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입식품등검사지침에 의한다.

③(동일사 동일식품 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동일사 동일식품 등의 인정은 이 훈령 시행당시 1년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 등 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9호, '97. 9. 29)

①행정규제 일몰조치에 의거 개정

부 칙(제40호, '97. 11. 3)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7. 11. 15.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가 진행중인 수입식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이 훈령 시행당시 검사기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입식품등검사지침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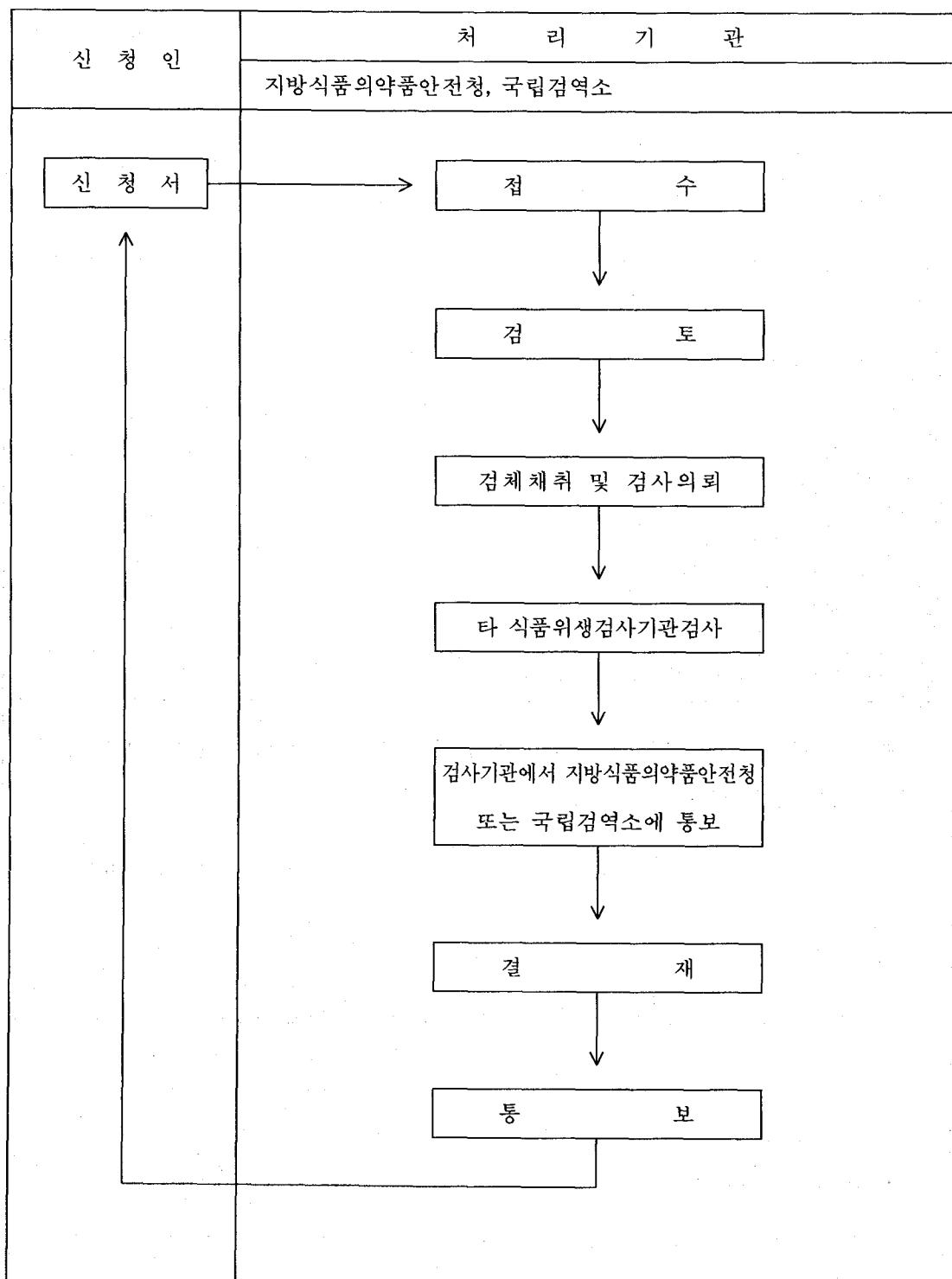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성명		업소명	
	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검사의뢰내용				
제품명				
식품의유형				
신고수량				
신고중량				
신고금액				
제조국 또는 생산국 및 제조회사명				
검사의뢰하고자 하는 타 식품위생검사기관명				
<p>수입식품등검사지침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검역소장 귀하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에 필요한 자료</li> </ol>				

31311-12311 민  
'96.12.23 제정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42호 —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1조의2 및 제56조제5항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회수·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2. “회수·공표문”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기 위하여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식품 등의 회수광고를 말한다.

제 3 조(회수대상 식품 등) 이 규칙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 등은 법 제4조 내지 법 제6조, 법 제7조제4항, 법 제8조 및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 한다.

제 4 조(식품회수평가위원회) ①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회수명령(이하 “회수명령”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수명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위해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 5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다.

1. 의사 또는 수의사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 6 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8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수명령) ①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식품등에 병원미생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에 현저한 건강상의 장애를 준 경우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회수명령에 관한 의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일자(유통기한)
3. 제조·가공업소명
4. 회수사유

제12조(회수계획) ①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품명, 제조·가공업소명(수입식품 등인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소를 포함한다), 판매경로, 판매량 등
2. 회수사유
3. 회수·공표문

#### 4. 회수·공표방법

#### 5. 회수방법 및 기간

#### 6. 회수된 식품 등에 대한 처리방법

제13조(회수·공표문) 회수·공표문은 별표와 같다.

제14조(회수결과의 보고) ①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유통·판매중인 회수대상 식품등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공표결과를 당해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회수·공표결과를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회수·공표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실적 등의 평가결과(제조·가공량·회수량·미회수량 등)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4. 회수·공표문

제15조(자진회수에 있어서의 회수·공표계획)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자진회수를 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회수·공표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공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자진회수에 있어서의 회수결과의 제출)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자진회수를 하는 영업자는 회수대상 식품 등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공표결과를 당해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 제출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회수·공표문(제13조관련)

식 품 등 긴급 회수

1. 회수제품명:

2. 제조일(유통기한):

3. 회수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영업자:

6. 영업자주소:

7. 연락처:

8. 기타:

비고: 1. 공표는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의 1면 내지 5면 사이에 게재한다.

2. 회수·공표문의 크기는 5단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활자는 고딕체로 하며, 눈에 잘 뜨이는 색으로 한다.

##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9호 —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전심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물”이라 함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전단, 제품설명서, 옥외 광고, 교통수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한 문자, 숫자, 도형 등 일체의 것으로서 표시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광고사전심의”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식품을 광고하기 전에 당해 광고물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받는 것을 말한다.
3. “전단”이라 함은 식품의 광고의 내용을 적어 공중에게 배포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제 3 조(심의대상식품 및 심의기구) ①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 및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에 각각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물은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에 설치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한다)에 대한 광고물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설치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명, 제품명, 가격면을 광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심의대상 광고매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신문·잡지·전단·제품설명서·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한한다.

제 5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식품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각 협회장이 10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업계의 대표가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협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 6 조(광고심의필표시)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을 광고할 때에는 ‘광고 심의 필’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② ‘광고심의필’ 문구의 크기, 위치, 기타 세부사항은 각 협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 7 조(심의수수료 등) 심의수수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세부시행규정) 각 협회는 심의기준,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수수료, 심의처리기한, 기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전단 또는 제품설명서에 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